

# 중국대학원 내규

2017



<http://GSC.skku.edu>

成均館大學校 中國大學院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내규는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등에서 대학(기관)에서 내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중국대학원(이하 “본 대학원”이라 한다) 소속 대학원 학생들에게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교육목표)** 본 대학원은 글로벌기본기 함양, 중국지역전문성 함양, 전문지식과 통합 능력 함양을 통해 중국 비즈니스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.

## 제 2 장 용어 정의

**제3조(학생구분)** ① 본 대학원의 학생은 정원내 일반학생(이하 “일반학생”이라 한다), 정원 외 외국국적의 학생(이하 “외국인 유학생”이라 한다)과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(이하 “계약학과 학생”이라 한다)으로 구분한다.

② 학칙제63조의2에 따른 본 대학원 교류수학생은 해외협력대학으로 파견하는 학생(이하 “해외수학생”이라 한다)과 해외협력대학에서 본 대학원으로 파견온 학생(이하 “교환학생”이라 한다)이 있으며, 해외협력대학의 학위취득 대상학생(이하 “복수학위생”이라 한다)으로 구분한다.

**제4조(전공분야 구분)** 본 대학원의 세부전공분야는 중국경영(Chinese studies in Management), 중국금융(Chinese studies in Finance), 중국창업전략(Chinese studies in Entrepreneurship & Strategy), 중국마케팅(Chinese studies in Marketing)으로 구분한다.

## 제 3 장 휴학 · 복학 · 유급 · 제적 · 징계 · 등록 · 장학

**제5조(휴학 · 복학)** ① 휴학 · 복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위해 교육 과정에 따른 학기에 맞추어 휴학 · 복학을 해야 한다.

② 집중과정과 해외협력대학 파견과정 기간에는 중도휴학을 할 수 없으나, 개인의 사고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학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. 이 경우 등록금은 잔여 수업일수에 따라 환불 처리한다.

**제6조(유급)** 학력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 내규 제20조에서 정한 파견을 위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급하게 하며, 유급한 학년은 수업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**제7조(제적)** 학칙에 따라 통산 2회 학사경고자는 제적하며,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퇴학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**제8조(징계)**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원장이 징계할 수 있다. 다만, 징계처분 전에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1. 본 대학원 학문적 윤리 규정을 위반한 학생
2. 중국대학원생 생활 수칙을 위배한 학생
3. 본교 학칙 제61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

**제9조(등록)** ① 정규학기등록 및 집중과정등록으로 구분하며, 등록금액은 원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.

② 해외협력대학 과정기간 해당 학기에도 본교로 등록금을 납부하며, 해외협력대학 교육비는 본교에서 별도로 지불한다.

③ 유급된 자의 등록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.

**제10조(등록예치금 책정 및 징수)** 신입생을 대상으로 등록의사 확인을 위한 등록예치금을 책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**제11조(등록금 및 등록예치금의 반환)** 등록금 및 등록예치금의 반환은 성균관대학교 학칙(별표9-2)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른다.

**제12조(장학금 종류)** ① 성적우수장학금: 입학성적 및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며 지급인원과 지급금액은 학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.

② 연구장학금: 교원의 연구를 지원하거나 본인의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자 가운데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며, 우수학생 선발 및 지급금액은 학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.

③ 특별장학금: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고,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.5이상인 자에게 지급하며, 인정범위와 지급금액은 학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.

**제13조(장학금 산정)** ① 장학금 총액: 장학금 총액은 각 입학 기수별 본 대학원에 납입한 등록금 총액에서 과정대학에 납입한 교육비를 제외한 잔여 총액의 30% 이내에서 장학금 총액을 산정한다.

② 장학금액: 학기별 장학금액과 수혜인원은 학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.

**제14조(장학생 선발)** 장학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.

1.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
2.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
3. 학업성적 성취도가 뛰어나고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**제15조(장학금 지급제한)**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직전학기 취득 학점이 6학점 미만인 경우
2. 학위과정 취득기간(일반학생 4개학기, 복수학위생 5개학기)을 초과한 경우
3. 계약학과 학생으로 산업체에서 교육비용을 100% 지원하는 경우
4. 재입학 후 1학기가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
5. 학사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장학금 지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#### 제 4 장 교육과정 운영

**제16조(학기구분)**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은 4개 학기로 운영하며, 여름·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집중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
**제17조(학기당 이수학점)** ① 본 대학원의 학기당 수강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. 다만,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개 학기에 한하여 3학점 추가 수강할 수 있으며, 집중과정에서는 정규학기 이수학점의 2/3이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.

② Taichi, 현장실습과목(일대일로, 중국몽 등), Pre-school 개설과목은 학기당 수강학점에

산입하지 않는다.

**제17조의2(교육프로그램)** 본 대학원의 교육프로그램은 중국 비즈니스리더 프로그램(China Business Leader Program, 약칭 China-BLP)이라 한다.

**제17조의3(과정)** 본 대학원의 교육프로그램은 주간과정(Daytime Course) 및 주말과정(Weekend Course)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**제18조(교육과정 이수)** ① 본 대학원의 수료학점은 36학점(논문연구 3학점 미포함)이며, 따로 지정한 Core과목을 이수해야 한다.

② 논문대체학점이수로 학위논문제출 면제가 가능하다. 세부사항은 이 내규 제36조 내지 제37조에 따른다.

③ 세부전공분야 및 협력대학별 Core과목의 선정에 대해서는 실제 개설교과목을 반영하여 학사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**제19조(교육과정 이수학기)** ① 본 대학원은 2년 4학기 과정이수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일반학생은 본교에서 3개 학기, 해외협력대학에서 1개 학기를 이수하여야 한다.

③ 외국인 유학생은 학생의 특성과 교육목적에 따라 해외협력대학 이수여부를 따로 정한다.

③ 복수학위생은 본교에서 3개 학기, 해외협력대학에서 1개 학기를 이수하되 복수학위 수여 요건에 따라 해외협력대학 수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한 학기는 수업연한에 포함한다.

④ 계약학과 학생은 본교에서 2개 학기, 협력대학에서 1개 학기 동안 수학하고, 각 학기 사이에 있는 여름·겨울방학 집중과정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총 3개 학기(2개의 집중 과정을 포함 1년 6개월)에 조기 과정이수를 원칙으로 한다.

⑤ 과정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추가로 등록하여 잔여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⑥ 주말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이 해외협력대학의 주말과정 이수를 희망할 경우 학사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할 수 있으며,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9조의2(수업언어별 최소 취득학점)** ① 주간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중국어수업을 24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.

② 주말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중국어수업을 18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.

**제20조(해외협력대학 파견 요건)** 해외협력대학으로 파견될 학생은 한국과정에서 24학점 이상(평점평균 3.00 이상), 중국어 新HSK 5급 이상(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인 중국어시험 성적 취득)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.

**제21조(파견 해외협력대학의 선정)** 파견 해외협력대학의 선정은 학생의 파견희망 대학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과 세부전공 분야에 따라 학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.

**제21조의2(분야 결정)** 주간과정으로 입학 한 학생의 분야는 전공과목 이수상황, 중국협력 대학 수학 상황을 고려하여 수료 전에 학사관리위원회에서 ‘중국금융’, ‘중국창업·전략’, ‘중국마케팅’ 중에서, 주말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생의 분야는 입학과 동시에 ‘중국경영’으로 결정한다.

**제21조의3(분야 변경)** ① 본교 학칙시행세칙(대학원) 제15조에 따라 중국대학원 학생 중 분야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를 제출하고,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원장의 허가를

받아야 한다.

② 주간과정 학생은 2기 종료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, 주말과정 학생은 중국협력대학  
파견시기를 고려하여 1기 종료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분야를 변경한 학생은 기존에 납부한 학비에 대해서는 추가납부 또는 환불하지 않으  
며, 분야를 변경한 학기부터 분야에 맞는 학비를 납부하여야 하고, 기존 장학금 대상여부  
와 상관없이 변경된 분야에 맞춰 학사관리위원회의 장학사정을 거쳐야 한다.

**제22조(해외교육과정의 거주)** 본 대학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입사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기숙사 입사가 어려운 경우, 해당 학생의 학부모 동의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원장이  
기숙사 영외 거주를 허가할 수 있다.

**제23조(학점 인정의 범위)** 국내외 타대학(해외협력대학 포함)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칙 제  
34조 및 별표10의2에서 규정한 대학원별 이수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만 졸업에 필요한  
학점으로 인정한다.

**제24조(이수구분처리 및 성적환산)** ① 국내외 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해당 대학에서  
취득한 학점 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.

② 이수구분은 전공과정에서 이수한 경우에만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전공학점으로 인정  
하고 그 외의 경우는 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.

③ 국내외 타대학 취득 성적의 본교 성적인정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

## 제 5 장 논문제출자격시험

**제25조(시험대상)** ①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외국어과목 시험  
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. 단, 외국인 유학생의 모국어가 영어 또는 중국어인 경우  
원장이 해당 외국어를 면제할 수 있다.

② 학위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공과목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, 전공과목 시험  
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B이상인 자로 한다.

**제26조(외국어과목)** 외국어과목은 영어와 중국어 2과목의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을 제출  
해야하며, 공인 외국어 성적의 합격점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..

호	구분	외국어 공인어학시험 및 점수	비 고
1	주간 과정	토익(TOEIC) 900점 이상 + 新중국어수평고시(HSK) 5급 이상	각 호의 영어와 중국어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하며, 해당성적과 상응하는 타 공인어학성적도 인정 가능
		토익(TOEIC) 800점 이상 + 新중국어수평고시(HSK) 6급 이상	
2	주말 과정	토익(TOEIC) 800점 이상 + 新중국어수평고시(HSK) 5급 이상	

③ 외국어과목의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 제출 기간은 1기부터 4기 학사 지정일까지로 한다.

**제27조(전공과목)** ① 전공과목 시험 교과목은 《중국경영 연구조사방법론》으로 한다.

② 전공과목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차기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.

**제28조(출제 및 채점위원)**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위원은 원장이 정한다.

**제29조(시험진행 및 보고)** 논문제출자격시험은 매학기 1회 실시하고, 3년간 보관한다.

## 제 6 장 학위청구논문

### 제 1 절 학위청구논문지도

**제30조(논문지도교수)** ① 논문지도교수는 중도에 변경할 수 없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로부터 계속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게 될 때에는 학과장의 제청에 의하여 원장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.

② 논문주제가 복합적일 경우 또는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명의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.

③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하기 위하여 논문지도 학생수를 지도교수 1인당 석사과정은 5명으로 제한한다. 단, 수료 학생은 제외한다.

**제31조(논문지도신청)** 본 대학원 학생은 논문제목을 기재한 논문연구계획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32조(논문지도교수 선정 시기)** ① 논문지도교수는 2기에 선정한다.

② 논문지도 교수의 선정 시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33조(예비심사)** ① 석사학위과정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B이상인 자는 지도 교수의 추천을 받아 예비심사원을 제출할 수 있다.

② 예비심사 대상자는 예비심사원 제출 시 논문작성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첨부하여 본 심사 2개 학기 전에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학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예비심사위원은 학과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하며,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교외전공자로 위촉할 수 있다.

④ 예비심사는 1회 실시하되, 공개심사는 생략한다.

⑤ 예비심사의 판정은 심사위원 2/3의 찬성을 합격으로 하며, 심사결과는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제 2 절 학위청구논문의 제출

**제34조(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및 합격요건)** ① 본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수료학점 중 36학점이상을 취득하고 그 평균성적이 B이상이어야 하며, 학위청구논문 제출학기까지 논문제출자격시험과 예비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.

② 논문심사 최종합격은 논문심사시행 학기말까지 수료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, 미취득시에는 합격을 취소한다.

**제35조(학위청구논문제출절차)**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납부하고, “학위논문심사신청서” 및 “학위논문답변자격심사결과보고서”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학위청구논문은 영어 또는 중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한국어와 중국어(또는 영

어)로 논문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논문심사를 위하여 그 원고를 석사학위는 3부를 학위청구논문 신청 1주일 전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36조(학위논문제출의 면제)** ① 전공과목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균성적 B이상인자는 수료학점 외에 전공과목 6학점을 추가 이수함(논문연구 3학점 제외)으로써 학위논문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.

② 수료자는 논문대체 추가등록을 통해 전공과목 6학점을 추가 이수함으로써 학위논문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.

③ 논문대체학점이수자의 경우에도 외국어과목 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.

**제37조(논문대체학점이수의 신청)** 논문대체학점이수로 과정이수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논문제출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신청에 유의하여야 한다.

### 제 3 절 학위청구논문심사

**제38조(논문심사)** ① 학위청구논문심사(이하 “논문심사” 라 한다)는 심사대상자의 공개발표, 질의와 답변, 심사위원들의 심사로 이루어진다.

② 심사위원은 학과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하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심사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③ 논문심사의 판정은 석사학위과정은 심사위원 2/3 이상의 찬성을 합격으로 판정한다.

④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은 심사 후 그 결과보고서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논문심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**제39조(학위논문제작)** ①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“중국대학원 학위논문인쇄 및 제본 요령”에 의거하여 논문을 제작하여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출 부수 및 기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### 제 7 장 위원회

**제40조(학사관리위원회)** ① 중국대학원 내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학사관리위원회를 둔다.

② 학사관리위원회는 원장, 학과장, 행정실장의 당연직 위원과 소속 교원 중 원장이 위촉하는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학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41조(기능)** 학사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입학전형 계획에 관한 사항
2. 교육과정 편성, 개정 및 수업개설에 관한 사항
3. 논문제출자격시험에 관한 사항

4. 지도교수 배정, 변경에 관한 사항
5. 학위논문 심사위원 배정, 변경에 관한 사항
6. 장학금 지급 기준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
7. 학생 파견 해외협력대학 선정에 관한 사항
8. 내규 제, 개정에 관한 사항
9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## 제 8 장 내규개정

**제42조(개정)** ① 원장은 학칙의 범위 안에서 본 대학원 학사관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내규를 개정할 수 있다.  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내규를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다른 내규의 폐지) 이 내규의 시행과 동시에 「중국대학원 학사내규」는 폐지한다.
- ③(경과조치)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본 대학원에 재적중인 자는 종전 내규에 따른다.

##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본대학원에 재적중인 자는 종전 내규에 따른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